

춘천지방법원 2021. 7. 6 선고 2020가단123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1.

판 결 선 고 2021. 7. 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4,867,75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C는 피고의 부모인데, 피고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.

나. C(여, 1941년 출생)가 치매 등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이 법원 2016노단441호로 C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, 이에 따라 2017. 1. 10. C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원고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었고, 위 심판은 2017. 2. 1. 확정되었다.

다. 피고가 근무하는 D는 직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(조부모, 부모, 자녀, 배우자 부모)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일정한 금원을 지원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갑 3, 을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요지

피고는 회사로부터 원고가 받아야할 직원부모진료비를 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,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14,867,7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다 을 3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,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부모진료비는 피고가 근무하는 D에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금원으로, 직원인 피고 본인이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뿐 원고가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, 설사 피고가 회사로부터 직원부모진료비를 받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지원하는 직원부모진료비에 관해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김도현